

제323회 임시회
2013. 9. 11.(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심기보 의원 외 6인

나. 제출일자 : 2013년 8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9월 4일

-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심기보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논의가 활발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를
NGO센터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 NGO의 사업에 사회적 경제 영역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NGO의 정의 확대 (공익 추구→사회적 목적 추구)
- NGO의 기능 확대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추가)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회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NGO의 정의에 “사회성”을 강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시민민주주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경제민주화와 실업난 해소의 대안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NGO센터의 기능에 포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사회적목적(공공성, 공익성)실현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조직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생략)</p> <p>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p> <p>7.~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NGO”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결성되어 함께하는 충북도정 발전과 사회적목적(공공성, 공익성)실현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p> <p>7.~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